

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

의안 번호	8-83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3. 14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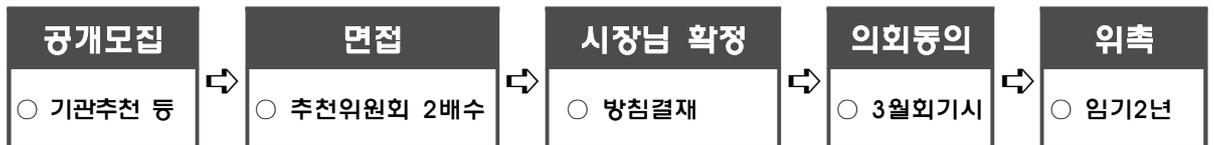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
-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원 중 올 6. 30. 임기만료자 2명의 위원 충원과 조례개정으로 정원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옴부즈만 위원을 추가 선정하여 의회 동의를 거쳐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임.

안산시 시민옴부즈만 현황

- 정 원 : 5명(현재 3명)
 - 2022. 6. 30. 임기만료 : 2명 / 2022. 10. 4. 임기만료 : 1명
- 임 기 : 2년
- 위촉절차



시민옴부즈만 위촉(안)

- 구 성 원 : 3명
- 구성현황 : 변리사, 건축사, 공무원

성 명	소 속	직 위	비 고
최OO(남, 61세)	안산시	안산시 시민옴부즈만	
윤OO(남 55세)	안산시	안산시 시민옴부즈만	
강OO(남 59세)	안산시	안산시 시민옴부즈만	